

안 제출기한 미표기, 위원회의 공무원 민간인 위원수 범위 미정과 표기착오 및 자구정정 등을 요하는 조문에 대한 보완과 시의원을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토록 하고자 하는 것임.

다.수정 주요골자

- (1)조례안 제명을 "서울특별시재정운영조례"라 함.
- (2)예산편성의 기본방향에 대한 근거법령인 지방자치법 제118조 및 지방재정법 제30조를 명시함.(안 제4조)
- (3)법적 예산안 제출기한인 "회계년도 개시 50일전까지"를 명시함.(안 제7조제1항)
- (4)재정계획심의위원회와 민자유치심의위원회에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인을 위원으로 위촉토록 하고, 공무원이 아닌 위원수는 전체 위원수의 과반수로 함.(제9조제2항, 제11조제2항)

6.심사결과

○수청안 의결(재적의원 12명, 출석의원 7명 전원일차)

7.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수정안

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조(정원의 총수)서울특별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은 16,679명으로 총수를 정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.

- 1.집행기관의 정원(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정원을 제외한다) : 11,531명
- 2.본청·소방학교·소방서등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: 4,593명
- 3.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: 332명
- 4.의회사무기구의 정원 : 223명

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

제1조(목적)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3조 및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원의 총수)서울특별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은 16,679명으로 총수를 정하고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.

- 1.집행기관의 정원(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정원을 제외한다) : 11,531명
- 2.본청·소방학교·소방서등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: 4,593명
- 3.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: 332명
- 4.의회사무기구의 정원 : 223명

제3조(정원관리기관별·직급별 정원의 규정)본청·의회사무처·직속기관·사업소 등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정원에 관한 경과조치) ①이 조례 시행당시 제2조 각호에 의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(이 조례시행전에 초과한 현원 168명 포함)이 있는 경우에는 2002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, 다만 초과 현원이 1급 지방공무원 또는 별정직지방공무원인 경우에는 1999년 12월 31일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.

②제2조제1호 중원 정원중 지방자치단체두는국가공무원의정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3의 규정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지방공무원으로 전환하는 3명에 대하여 1998년 8월 31일부터 적용한다.

제3조(한시정원)집행기관의 지방공무원 정원중 24명(교통운영개선기획단)과 15명(서남권농수산물도매시장건설기획단)은 2002년 12월 31일까지, 30명(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)은 200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으로 한다.